

노원문화재단 기부(후원) 예우기준



2022년 9월

노원문화재단 후원(기부) 예우 기준 개정(안) : WATON(WATERING ARTS TREE OF NOWON)

구분	예우 내용 ※ 최초 기부년부터 3년내로 혜택보장 단 연 단위 한도 적용	후원회 정회원(개인·기업·단체)					개인·기업·단체	개인			부정기
		무궁화	철쭉	모란	동백	목련	석류	진달래	수국	백합	
기획 공연 예우	할인	동백 동일	동백 동일	동백 동일	연10회 (50% 동반1인)	연10회 (50% 동반1인)	연10회 (50% 동반1인)	연8회 (50%, 동반1인)	연6회 (50%, 동반1인)	연4회 (50%, 동반1인)	연2회 (50%, 동반1인)
	초대	동백 동일	동백 동일	동백 동일	개인 연6회(동반1인) 기업 연5회(1회당 15매)	개인 연4회(동반1인) 기업 연4회(1회당 10매)	개인 연3회(동반1인) 기업 연3회(1회당 5매)	연3회 (동반 1인)	연2회 (동반 1인)	연1회 (동반 1인)	-
감사	감사패 증정	○	○	○	○	○	-	-	-	-	-
	감사장 발송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초청 문화 행사	초청문화공연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기업문화공연 ※찾아가는 문화공연 등	○	○	-	-	-	-	-	-	-	-
	네트워킹 파티 ※친선의 밤	○	○	○	○	○	-	-	-	-	-
명예 헌정	기부자료 명시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홈페이지 명시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기본 예우	기부영수증발행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운영결과보고서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
※ 할인혜택 안내사항

- 초대권 혜택은 노원문화재단 정책기획부 별도 유선 문의(02-2289-3471)
- 할인혜택은 타인 양도 불가.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본인 확인 후 티켓 수령(본인 확인이 불가시, 차액 지불)

노원문화재단 후원(기부) 세액공제

□ 법인기부자

- 기부금(반대급부×)는 기업소득의 10%의 한도에서, 20%의 세액감소 효과

기부유형	손금산입 한도(비용으로 처리)	세액감소 효과
지정기부금 단체	• 소득금액의 10%, 사회적 기업 20%	• 손금산입 한도 내 기부금의 20%

□ 개인기부자

- 소득 5천만원, 기부금 1백만원의 경우

- 5천만원의 30%인 1천5백만원이 공제한도 → 1백만원의 15%인 150,000원 공제

- 소득 2억원, 기부금 1억원의 경우

- 2억원의 30%인 6천만원이 공제한도 → 6천만원의 공제한도 초과분 4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

- 1천만원의 15% 1,500,000원 + 5천만원의 30% 15,000,000원 = 16,500,000원

기부유형	세액공제한도	세액공제
지정기부금 단체	• 소득금액의 30%	• 기부금액의 15% •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%